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9서식] <개정 2025. 7. 1.>

고용보험 ()년도 보수총액신고서(노무제공자용)

※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매체(CD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취득일	월 보수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사업장 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과납 보험료 선납 총당 또는 반환 신청서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	-----	-------	------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